

● 제27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9.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339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6. 8. 12.
- 다. 회부일 : 2016.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직장맘에 대한 근거리 상담지원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1개 권역을 추가 설치

-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노하우 및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탁기간 : 2년 (2017. 7.~ 2019. 6.)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330백만원

○ 주요 위탁사무

-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직장맘 3고충(직장내·가족관계·개인)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
- 출산·육아기 직장맘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
- 직장맘 3고충 원스톱 종합 연계 정보 서비스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연계 부모교육 및 심리상담
- 직장맘의 법적 권리 안내 및 사업주 제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
- 직장맘을 위한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 제작
-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장맘 법률 상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법률자문 리서치, 법률교육, 제도개선 추진 등 직장맘들의 모성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
- 초기 정착기간 최소화를 위해 관련분야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장맘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요

- 본 동의안은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1)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주요 사무는
 -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직장맘에 대한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 지원
 - 출산·육아기 직장맘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
 - 직장맘의 법적 권리 안내 및 사업주 제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
 -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이며,

- 위탁기간은 2년(2017. 7. ~ 2019. 6.)임.

2.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확대 계획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시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해소하고, 직장맘의 권리를 보호하며 일·가족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년 3월에 최초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현재 광진구 소재)' 를 개소하였음.
- 이후 직장맘들의 상담 및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상담건수 '12년 474건-> '14년 22,79건) 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의 사업을 확대하여 근거리 상담 및 원활한 밀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권역별(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로 1개씩 총 4개소로 확대하기로 함(2015년 10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운영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방침서).
- 이에 지난 '16년 3월에 서남권에 위치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금번에 서북권 은평직장맘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이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그림 1. 연차별·권역별 확대(안): 2019년까지 3개소 추가 (現 2개소 → 2019년 4개소)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現 직장맘지원센터 (동남권)	■	■	■	■	■	■	■	■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					■	■	■	■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						■	■	■
노원직장맘지원센터 (동북권)								■

- 현재 운영중 인 2개소의 직장맘지원센터별 운영 현황과 향후 설치하게 될 은평직장맘지원센터와의 비교표는 아래의 <표 1>과 같음.

<표 1. 직장맘지원센터별 주요 현황 등 >

구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은평 직장맘지원센터
시설현황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동 부여성발전센터 내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2층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내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내
위치 (권역)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규모	122㎡	61㎡	80㎡
주요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동부발전센터 내 교육장 활용)	사무실 및 상담실	사무실 및 상담실 (혁신파크 내 교육장, 회의실 등 활용)
주요기능 (및 특기능)	· 원스톱 종합상담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운영 ·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등	· 원스톱 종합상담 · 기업·근로자대상 찾 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 제공 ·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등	· 원스톱 종합상담 · 부모교육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등
개관일	2012.7.17	2016.7.20	2017.7월 예정
운영실적 (‘16.7월 말 기준)	· 종합상담 : 3,684건 · 분쟁해결 : 20명 ·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등	-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직장여성이 겪는 고충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시의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²⁾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³⁾

2)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9조 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및 제6조 제9호4)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5)에 따른 해당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그러므로, 상기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4)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5)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은평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맘의 권리보호, 일·가족 양립 등을 지원·운영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노무사의 노동권 상담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모성보호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 이의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등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런 점에서 상기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현장의 정책수요 기반한 연계정책 필요

- 각 권역별 직장맘지원센터의 접근성·차별성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서울시가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서울시의 동·서·남·북부 권역별로 총 4개소의 설치 목표를 세우고 있고, 동부와 서남권에 이어 금번에 서북권 설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각 권역별 설치장소가 이용자의 수요에 기반한 지리적 장소가

확보되기 보다는, 공간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용 가능한 공간 중심으로 결정되어 진다는 점에서, 실 수요자에게는 그 물리적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금번의 은평직장맘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서울시혁신파트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의 직장맘의 수요조사 등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마찬가지로 각 권역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특징이 보다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직장맘지원센터 중간평가 필요 및 현장의 정책수요 기반한 연계정책 필요

- 나아가, 현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이 만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는 나아가 직장맘지원센터의 확대 계획에도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되어질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각종의 정량적 지원실적(예. 상담 횟수, 교육 및 홍보횟수 등)이외에 각종 서비스 유형별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제 현장의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 등이 일·가족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심층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현장과 행정·정책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반 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6. 동의안의 제명에서 ‘설치’에 관한 사항 삭제 필요

- 본 동의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으로, 제명만으로 볼 때는 동 센터의 ‘설치’ 까지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짐.
- 그러나, 민간위탁하려는 동 센터의 설치 권한과 의무는 시장에게 있으며, 법적으로도 ‘설치’에 대한 위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이 점을 고려하면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비록 제명에서는 ‘설치’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하의 동의안 내용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제명 기록에 대한 집행부서의 단순 실수로 판단 되는 바, 이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